

#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 등 지급기준

## 1 강사수당 지급기준

### 가. 일반강의 강사수당

| 등급  | 지급기준(만원)    |         | 적용대상(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)   |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|
|     | 최초 1시간      | 초과 매시간  | 일반  | 공직자 등   |
| 특1급 | 40          | 30(20*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</li> <li>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</li> <li>대기업 회장</li> <li>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관급*, 광역자치단체장*</li> <li>대학총장(장관급)</li> <li>국회의원*</li> </ul>  |
|     | (시간보상수당 30) |         |   |   |
| 특2급 | 30          | 20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직 차관(급)</li> <li>전직 공기업 대표</li> <li>전직 기초자치단체장</li> <li>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관급, 대학총장(차관급)</li> <li>기초자치단체장</li> <li>공직유관단체장</li> </ul>  |
|     | (시간보상수당 20) |         |   |   |
| 1급  | 25          | 12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직 4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</li> <li>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</li> <li>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</li> <li>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, 세무사 등 <b>전문자격증을 가진 자</b>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·소양·외국어·전산 강사 제외)</li> <li>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</li> <li>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지방의회의원</li> <li>대학의 교수</li> <li>공직유관단체 임원 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)</li> <li>언론인</li> </ul> |
|     | (시간보상수당 12) |         |   |   |
| 2급  | 15          | 8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직 5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</li> <li>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</li> <li>원어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</li> <li><b>전문자격증을 가진 자</b>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대학의 강사 등</li> <li>공직유관단체 직원</li> </ul>  |
|     | (시간보상수당 8)  |         |   |   |
| 3급  | 10          | 5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국어, 전산 등 강사</li> <li>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<b>해당 분야 5년 이상(외부 경력 포함) 또는 3년 이상(자치인재원 경력) 강의 경력자</b></li> <li>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  |   |
|     | (시간보상수당 5)  |         |   |   |
| 4급  | 8           | 4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</li> </ul>  |   |
| 5급  | 6           | 3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</li> </ul>   |   |

- 주) 1.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2.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3. '공직자 등'이란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장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)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
4.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.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
5. '공직자 등'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.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6.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.
7.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, 기타 특강, 일반강좌,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
8.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(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, 인천대학교 등)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
9. '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' 기준
- 가. 출연연구기관 :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(KDI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경기연구원 등)
- ※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기관은 적용 안 됨
- 나. 부연구위원 :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, 「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·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
10.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
11.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

## 나. 퍼실리테이터(FT) 수당

| 적 용 대 상   |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역량교육·평가 관련 업무·강의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· 전·현직 5급(상당)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</li> <li>·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</li> <li>· 관련 학위(석·박사) 수여자 : (산업)심리학, 교육(공)학, HRD, 경영학, 행정학 등</li> </ul> | <b>최초 1시간 15만원</b><br>초과 매시간 12만원 |

- 주) 1.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로 지급
2.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, 매시간 5만원 지급
3.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

## 다. 사이버교육 강사수당

| 기준    | 지급요건                 | 지급액   | 한도기준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답변 실적 |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       | 2만원/건 | 최대 10만원 |
| 지도 실적 | 학습 방향 제시, 관련 자료 제공 등 | 2만원/건 | 최대 10만원 |

- 주) 1.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, 유사·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
2. 지도 실적의 경우,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,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

## 라.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

| 구분    | 실적기준              | 지급액          | 한도기준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대면지도  |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|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| 4시간 범위  | -  |
| 온라인지도 | 질의에 대한 답변         | 1만원/건        | 최대 20만원 | 자기주도학습의 날~<br>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<br>전일까지 실적 기준 |
|       | 연구과제 추진지도         | 2만원/건        | 최대 20만원 |  |

## 마. 자문 및 심사수당

| 구분   | 실적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문수당 |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<br>T/F 자문 역할 수행자 | 최초 1시간 10만원<br>초과 매시간 10만원 |
|      | E-mail, 서면 자문 요청 시              | 1회당 10만원                   |
| 심사수당 | 내용 심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부 이내 1부당 2만원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부 초과 1부당 0.3만원           |
|      | 발표 심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간당 6만원                    |

- 주) 1.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·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
## 2 시험관리비 지급기준

| 구분        |         | 단위    |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출제비       | 객관식     | 문제당   | 3,000원                   | *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출제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|
|           | 주관식     | 과목당   | 45,000원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주관식 단답형 | 문제당   | 3,000원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실기·실습   | 문제당   | 20,000원                  |  |
| 주관식 채점비   | 기본료     | 10부까지 | 50,000원                  | *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채점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|
|           | 초과 논술형  | 1부당   | 2,000원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초과 약술형  | 1부당   | 800원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실기·실습 채점비 |         | 1부당   | 3,000원                   |  |
| 문제선정 심의비  |         | 과목당   | 45,000원                  |  |
| 문제편집·편찬비  |         | 일당    | 10,000원                  | *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|
| 녹음편집수당    |         | 일당    | 30,000원                  |  |
| 시험 감독비    |         | 일당    | 평일 30,000원<br>휴일 40,000원 | *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시험장별 요원 2인에 대해서만 지급<br>- 2시간 초과 전체 지급<br>- 1시간~2시간 이하 2/3 지급<br>- 1시간 미만 1/3 지급 |
| 면접·실기 채점비 |         | 일당    | 40,000원                  |  |

주) 1.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문제·부수당·시간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교육의 특성 및 여건,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당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주) 2.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에 없는 사항들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% 이내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·과정별 평가계획 등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

### 가.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

| 권역  | 지역 구분   | 지급 여부 |
|-----|---|-------|
| 1권역 | (4개 지역)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지급   |
| 2권역 | (13개 지역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| 지급    |

## 나. 강의시간 산출기준

| 강의 시간 | 1시간 이상~<br>1시간 30분 미만 | 1시간 30분 이상 ~<br>2시간 30분 미만 | 2시간 30분 이상 ~<br>3시간 30분 미만 | 3시간 30분 이상 ~<br>4시간 30분 미만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출기준  | 1시간                   | 2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| 3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| 4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) 1.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
 ※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

## 다.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\*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

| 강의 시간  | 출강 인원          | 지 급 액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2시간 미만 | 5인 이하          | 50만원  |
|        | 6인 이상 ~ 10인 이하 | 70만원  |
|        | 11인 이상         | 90만원  |
| 2시간 이상 | 5인 이하          | 70만원  |
|        | 6인 이상 ~ 10인 이하 | 90만원  |
|        | 11인 이상         | 110만원 |

주) 1.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
## 라.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

| 과 정         | 수강 인원             | 할 증 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개 과정       | 100인 이상 ~ 250인 미만 | 20%   |
|             | 250인 이상           | 30%   |
| 2개 이상 과정 합반 | 250인 미만           | 20%   |
|             | 250인 이상           | 30%   |

주) 1.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

## 마.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

-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(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)
-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(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)

## 4 여비보상 지급기준

### 가. 지급대상 및 지급액

| 지급 대상     | 지급액  |
|-----------|--|
| 외래강사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」 준용</li> <li>· 【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】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</li> </ul> |
| 현지방문교육 강사 |  |

- 주) 1.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(근무지 외 일비규정) 및 제18조(근무지 내 여비규정)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(편도 포함)하는 경우 일비 또는 근무지 내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, 근무지 내 여비는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지급
2.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·숙박비·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

### 나. 대체지급

-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